

[국문 요약본]

AGE Platform Europe¹의 코로나19와 노인인권 보고서

(COVID-19 and human rights concerns for older persons)

- 2020. 5. 18. 업데이트 버전

- 요약 및 국문번역: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영미 연구원 (lym3663@asemgac.org)

1. 서론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노인인권의 현황(유럽)과 각국 정부의 대응이 노인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이 직면하게 된 우려스러운 문제들과 노인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대응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추후에는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유럽 전역의 사회 및 보건 시스템 개혁과 같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2. 핵심 메시지와 권고

“노인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은 노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데 뚜렷한 위협이 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노인의 건강에 관한 특정 위험 요소나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인구취약집단과 함께 일부 노인에게는 추가적 지원 – 음식과 같은 필수 물품에의 접근, 돌봄 및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 사회적 고립 방지 등 – 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노인에게 필수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인구집단에) 균형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은 상품 및 서비스의 분배와 사람의 취약성, 의학적 예후 또는 치료

¹ 노인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의 유럽 네트워크로, 노인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당사자인 노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유럽 내 노인 관련 문제의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 선택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설 거주자, 혼자 생활하는 사람,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디지털 배제 위험이 있거나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필수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사회 복지 종사자의 가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 뿐 아니라 공식 및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안전 보호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디지털 배제의 위험이 있거나 인지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에게 투명하고 완전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 속 즉각적 대응방안이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건강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

- 정부는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사람 뿐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모든 의료진 및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제공해야 한다. 대다수의 유급 및 무급 돌봄 제공자가 여성 노인이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성 노인의 감염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².
- 모든 인구 집단은 의약품 및 보호장비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 특별히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생명 구제 개입의 권리가 있다.** 인명 구조 용구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의료 지침이나 치료 우선순위를 위한 프로토콜(triage protocol)이 필요할 수 있으나, 연령이 이러한 지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령, 장애 등 비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프로토콜은 건강권과 생존권에 위배된다.
-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가 가능해지면 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한 의학적 증거나 타당한 근거가 기반이 되어

2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covid-19_and_older_persons_1_may_2020.pdf;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19_b768405f-en;

https://www.euro.who.int/_data/assets/pdf_file/0019/290440/Core-Health-Indicators-European-2015-human-resources-health.pdf

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병원진료가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되었지만, 디지털 배제로 인해 원격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로는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 서비스의 물리적 접근도 가능해야만 한다**. 또한 **외딴 지역**에 사는 경우, 전화 상담이나 가정 방문 등과 같은 대체 수단의 마련이 요구된다.
- 팬데믹 상황에서의 **필수적 정보들** - 보호 및 예방 수단, 의료 서비스 접근 방법 등 - 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인쇄물,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아픈 경우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화/인터넷 업체와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해 낮은 사용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병원과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인해 분주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병원 침대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를 조기 퇴원³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긴급 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위해 **응급 서비스는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 알림 메시지 서비스(Health Alert messaging service)”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정보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
- ✓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검사 우선 대상자에 노인 요양시설의 모든 거주자와 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함.

3-가. 건강에 대한 교차성 분석(Intersectional approach to health)

- **젠더적 관점**: 사회복지 종사자 및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대다수가 나이든 여성이며, 돌봄 수혜자도 여성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노인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은 전 생애에 걸친 차별로 인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독거노인의 대다수가 여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팬데믹 대응방안 마련 시 젠더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연령차별**: 팬데믹 이전에도 노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러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적절한 치료 제공의 거부는 인권 침해이며, 노인 또한 완화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통합적 보건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덴마크 길렐라이에(Gilleleje)에서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였던 환자가 병원 치료가 요구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하루만에 퇴원한 후, 요양시설 거주자 4명 및 종사자 4명이 확진 판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해당 확진자에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였으나, 이 사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요양시설 거주자의 입원 및 퇴원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https://www.aeldresagen.dk/om-aeldresagen/ligenu/corona/Synspunkt/corona-det-mener-aeldre-sagen?scrollto=start>

- **생활환경:** 소외되고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보건이나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폐쇄조치(lockdown)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성소수자:** LGBTI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의료 종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뢰하는 의료진과의 만남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⁴. LGBTI와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접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별없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LGBTI가 더 높은 HIV 감염률을 나타내므로 이들이 적절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⁵.

3-나. 노인의 정신 건강

- 보건 전문가들은 **장기적 격리조치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⁶ 신체활동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의 대안으로 비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체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 격리조치로 인한 **장기화된 고립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⁷, 격리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팬데믹 중에도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 시설 노인들이 친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의 비대면 소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벨기에에는 정신 건강 전문가가 운영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를 마련하여 격리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음.
- ✓ 아일랜드의 치매 정보 센터(Dementia Services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re)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매 환자의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고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배포함.
- ✓ NGO: **Age UK**는 불안함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Mental Health Europe**은 EU 전역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망라한 지도를 개발하였고, **DaneAGE**는 노인들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침을 개발함.

-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저하를 겪는 노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추가적인 혼란과

4 <https://www.age-platform.eu/press-releases/older-lgbti-how-do-they-live-through-covid-19>

5 <https://www.aidsmap.com/about-hiv/coronavirus-covid-19-and-hiv>

6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mental-health-considerations.pdf>

7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8017>

스트레스를 일으켜 더욱 빠른 질병의 진행을 초래할 수 있다. **치매 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활동, 정보,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공영 방송의 제공은 환자와 가족들이 팬데믹 시기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3-다. 자기결정권과 완화치료

- 노인은 의학적 치료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는 동시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완화 치료 또는 임종케어(end of life care)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이나 삶에 대한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단계의 치료와 돌봄에 있어서 그들의 **사전적 동의와 바람이 반영되어야 한다.**
-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완화치료를 위한 프로토콜이 부재하고 호스피스와 보건의료체계 간 통합이 불충분한 상황으로⁸,**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시급하다.
- 노인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do not resuscitate agreement)’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⁹. 과도한 압박으로 노인에게 이러한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오스트리아**의 국가 완화치료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는 코로나19 위기 속 완화치료 관련 성명서를 발표함.
- ✓ **스코틀랜드** 정부도 코로나19 완화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함.

4. 사회적 포용 장려 및 디지털 배제 방지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사회적, 정서적 고립은 치매 위험 및 인지능력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분리는 특히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노인¹⁰의 외로움과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독거 노인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의 제공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생명선(lifeline)이 되어줄 수 있다.
- 일시적 폐쇄조치(lockdown)에 따라 소통과 서비스 접근을 위해 **디지털 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노인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

8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3.18.20038448v1>

9 https://amp.theguardian.com/world/2020/apr/01/uk-healthcare-regulator-brands-resuscitation-strategy-unacceptable?__twitter_impression=true; <https://www.ageuk.org.uk/latest-press/articles/2020/04/age-uk-response-to-dnr-forms/>

10 2019년 기준 EU 28개국의 개인 디지털 활용 수준은 평균 58%인 반면 65-74세는 26%를 기록함.

는 온라인을 활용한 쇼핑, 은행업무, 화상통화, 이러닝(e-learning)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속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의 접근이 어렵다**. 2019년 기준 **EU의 65-74세 인구 중 단지 61% 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¹¹, 55세 이상 인구 중 약 6-7%는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¹².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소외된 그룹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¹³. 소외 계층도 전화, 인터넷 등의 매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쇄조치 동안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 외에도** 라디오, TV, 문자 메시지,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중앙은행에서 현금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식료품점이나 상점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현금 외의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 필수품을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결제 또한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영국의 인터넷 및 전화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고객들이 팬데믹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5. 노인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과 낙인

- 코로나19는 노인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며, WHO는 모든 연령의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병임을 명확히 발표한 바 있다.
- 노인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하나, **노인을 허약하고, 수동적이며, 사회의 부담으로 낙인찍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인도 우리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이며, 그들도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례 없이 많은 노인 차별적 발언들이 각종 매체에서 쏟아졌으며, **노인이나 코로나19에 관계된 트위터 게시물 중 거의 25%가 연령차별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¹⁴. 또한 최근 노인에게 '코로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

1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3217494/10166544/KS-02-19%E2%80%911681-EN-N.pdf/c701972f-6b4e-b432-57d2-91898ca94893>

1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ilc_mddu07a

13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covid-19_and_older_persons_1_may_2020.pdf

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32338787>

이 노인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라는 이유로 제안되었다¹⁵.

- 이렇듯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덜 가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수많은 기여를 무시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혐오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노인에 대한 공격적인 사건¹⁶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 많은 국가들이 이동제한 해제 조치(deconfinement)를 계획하고 있으나, 노인의 이동제한 조치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여 유럽의 노인 관련 단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법에 따르면 비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야 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¹⁷. 연령은 이러한 비상 조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노인의 자율성, 존엄성 및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의견과 필요 또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WHO는 팬데믹 상황 속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tigma-guide.pdf>)
- ✓ 몇몇 정부에서 노인 한정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계획을 수정하기로 함.
(<https://www.notretemps.com/dossier-coronavirus/prolongation-du-confinement-des-seniors-c-est-non,i217656>)

6. 사회적, 시민적 및 경제적 참여 촉진

- 많은 노인들은 **돌봄 노동, 봉사활동, 시민 운동** 등 다양한 유급 및 무급 노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노인의 감염 위험을 줄일 방안** 뿐 아니라 노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져올 **사회적 손실이나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지원이나 필수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제한 및 사회폐쇄 조치는 **젊은 세대나 지역사회에 추가적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노인에게서 이러한 역할을 박탈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따라서 **건강하고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5 <https://www.lesoir.be/300796/article/2020-05-14/un-economiste-belge-propose-une-taxe-corona-uniquement-pour-les-personnes-agees>

16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mar/23/three-teenagers-held-for-allegedly-coughing-at-elderly-couple-hertfordshire?CMP=share_btn_link

17 https://www.ohchr.org/Documents/Events/EmergencyMeasures_COVID19.pdf

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 **의료 종사자나 경찰 등의 응급 서비스 제공 가능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러한 직종에 한해 **퇴직을 연기하거나 퇴직 후에 한시적으로 직업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¹⁸.

- 만성 폐질환과 같은 **위험 그룹에 속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의 정상근무가 권고된 후에도 **재택근무 연장**과 같은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법에 의해 정의된 의학적 기준이나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폭력,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위험

- 자가격리 및 폐쇄조치 기간 동안 **노인은 돌봄 제공자와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 학대, 방임의 위험**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¹⁹.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은 학대나 폭력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노인 학대나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피해자들을 한층 더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²⁰.
- 특히 **시설보호를 받는 노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학대나 방임에 취약한 상태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더욱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²¹.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노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여성 노인**이 특히 위험해질 수 있으며, 거절이나 학대의 두려움으로 인해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모든 연령대의 **LGBTI** 또한 자가격리나 폐쇄조치로 인해 혐오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²².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가정 폭력이나 노인 방임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염병 발생 이전에도 노인학대는 80%나 축소** 보고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은 노인학대 피해자들의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노인 학대의 예방과 구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 관련 종사자들은 학대 사실을 감지하고 도움을 구할 방법에 대해 훈련되어야 한다.
- 자가격리 중인 노인들이 은행 정보 수집, 사기성 제품 판매, 가짜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 **사기**

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9/nhs-dads-army-plan-for-coronavirus-spread-pandemic-strategy>

19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친척에 의한 노인학대가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https://www.telegraph.co.uk/news/2020/05/17/silent-scandal-elderly-abused-lockdown/>

20 <https://www.ageuk.org.uk/latest-press/articles/2020/04/280000-people-aged-60-to-74-experienced-domestic-abuse/>

21 <https://pubmed.ncbi.nlm.nih.gov/32245346/>

22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LGBT/LGBTpeople.pdf>

의 표적이 되고 있다²³.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 제공 캠페인이나 사기를 신고하기 위한 전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8.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인의 인권

8-가. 요양시설의 노인

-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만성 기저질환이나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 **건강 악화와 감염 위험**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²⁴. WHO에 따르면 **유럽의 모든 코로나19 관련 사망의 약 절반 정도가 노인 요양원과 관계**가 있으며²⁵,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와 WHO는 요양시설 내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개인보호장비의 부족함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부족**이 장기요양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직원들이 병에 걸린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 훈련이나 경험이 전무한 보건 전문가가 투입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시설은 팬데믹 이후 발생한 돌봄 관련 문제들 - **집중적 돌봄 수요의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 악화된 근로 조건** 등 - 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²⁶.
- 일부 국가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진단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조차 없기도 하다. 이러한 관행은 명백한 차별이며,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완화치료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장기요양시설에서의 감염과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WHO의 임시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²⁷.
- 광범위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내 거주자와 직원에 대한 **사전적 검사도 권장**된다²⁸. 또

23 <https://www.age-platform.eu/age-member-news/age-members-warn-against-online-fraud-during-covid-19>

24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1508/WHO-2019-nCoV-IPC_long_term_care-2020.1-eng.pdf

25 <https://www.euro.who.int/en/media-centre/sections/statements/2020/statement-invest-in-the-overlooked-and-unsung-build-sustainable-people-centred-long-term-care-in-the-wake-of-covid-1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europe/nursing-homes-coronavirus-deaths-europe/2020/04/23/d635619c-8561-11ea-81a3-9690c9881111_story.html

26 <https://ltccovid.org/wp-content/uploads/2020/04/COVID19-Long-Term-Care-situation-in-the-Netherlands-26-April-2020.pdf>

27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1508/WHO-2019-nCoV-IPC_long_term_care-2020.1-eng.pdf

28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strategy-update-14april2020.pdf?sfvrsn=29da3ba0_19&download=true

한 예방 차원으로 시설 내에서 격리된 거주자에게 매일 일정 수준의 **사회적 소통**이 제공되어야 한다²⁹.

- 코로나19에 대한 **안전과 보호 조치**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모든 요양시설이 방문객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³⁰. 우울증이나 식사 거부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³¹. 일부 국가에서는 **방문객을 다시 허용**하고 있어 고무적이다³².
- 전염병의 확산 속 **요양원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³³. 요양시설 거주자의 가족과 직원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소식을 수일 동안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주자 개인과 시설의 상황(확진자 및 사망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따라서 모든 사망은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인권 의무의 위반으로, **모든 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나. 독거노인

- **혼자 사는 노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고립될** 위험이 더 높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특히 **초고령 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인**은 더욱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³⁴.
-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여러 제한조치(폐쇄조치, 자가격리 등)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영양실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³⁵,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고립될 위험이 더욱 높다. 또한 **지역사회 모임과 자선단체 활동이 중단**되어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더 높은 고립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³⁶.
-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딴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전염병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운전면허 갱신

29 <https://rm.coe.int/16809cfa4b>

30 <https://www.hrw.org/news/2020/03/20/us-nursing-home-visitor-ban-isolates-seniors>

31 <https://soirmag.lesoir.be/295963/article/2020-04-22/nos-aines-sont-sacrifies-la-preuve>

32 https://www.age-platform.eu/sites/default/files/BAGSO_statement_COVID19_End_social_isolation-April2020.pdf

33 <https://www.defensordelpueblo.es/noticias/residencias-mayores-la-crisis-del-covid-19/>

34 <https://ageingissues.wordpress.com/2020/03/21/covid-19-statement-from-the-president-and-members-of-the-national-executive-committee-of-the-british-society-of-gerontology/>

35 <https://www.ageuk.org.uk/latest-press/articles/2020/05/sounding-the-alarm-about-the-rising-risk-of-malnutrition-among-older-people-during-lock-down/>

36 <https://inews.co.uk/opinion/comment/its-vital-we-address-how-coronavirus-disproportionately-affects-lgbt-people-2546322>

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팬데믹 동안에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스페인에서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및 다른 공식 문서들의 유효 기한이 격리조치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됨.
- ✓ 벨기에의 요양시설에서는 소셜미디어와 화상통화를 통해 거주자와 친인척 간 소통을 활성화함.
- ✓ 아일랜드의 우체국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사회보장부처와 협력하여 자가격리 중인 노인을 위해 연금을 대신 수령할 "긴급 임시요원 제도"를 도입함.
- ✓ 스웨덴 엠틀란드주의 베리 시(Municipality of Berg)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무료 음식(지자체와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배달함.

(<https://www.svt.se/nyheter/lokalt/jamtland/fri-hemleverans-av-matkassar-till-alla-over-70-i-bergs-kommun>)

8-다. 지역사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 많은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지역사회나 가정의 지원과 돌봄에 의존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에도 불규칙하고 불충분했던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돌봄 제공자의 부족함, 이외의 정부가 취한 여러 제한 조치들로 인해 더욱 접근이 어려워졌고, 노인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 많은 지역사회의 주간 및 위탁 보호 센터와 그 밖의 서비스들도 중단되었다. 돌봄 제공자로 일 하던 이민자들이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가 부족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³⁷.
- 이로 인해 주로 여성 노인인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이 커졌으나, 요양시설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나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정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인권 변호 및 연구를 하는 비영리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중단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시설 입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망을 비롯하여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³⁸." 고 하였다.
- 격리 중에도 온라인 수단 활용 등을 통한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37 <https://ltccovid.org/wp-content/uploads/2020/04/The-COVID-19-Long-Term-Care-situation-in-Austria-28-April-2020-1.pdf>

38 https://www.hrw.org/news/2020/03/19/human-rights-dimensions-covid-19-response#_Toc35446581

정부와 지자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자원 봉사자 활용을 포함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우수사례]

- ✓ **영국** 정부에서는 팬데믹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돌봄을 제공할 봉사자를 구하였는데, 원래 목표인 25만명을 넘어 62만명이 넘는 신청을 받음. 이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줌.
- ✓ **오스트리아**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함.
(<https://ltccovid.org/wp-content/uploads/2020/04/The-COVID-19-Long-Term-Care-situation-in-Austria-28-April-2020-1.pdf>)
- ✓ **독일**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돌봄 제공자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발표함. 또한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비공식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비공식 돌봄 휴가를 연 10일에서 20일로 늘림.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kuthilfe-fuer-pflegende-angehoerige-beschlossen/155550>)
- ✓ **아일랜드**의 보건 서비스 행정부(Health Service Executive, HSE)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지침을 개발함.
(<https://ltccovid.org/wp-content/uploads/2020/04/Ireland-COVID-LTC-report-updated-28-April-2020.pdf>)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